의안번호	2210167
의 뢰 인	이원택 의원
회 답 일	2025. 5. 14.
추계번호	25B259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 포함	의무규정
2	안 제2조의3 (실태조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조의4 (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손해평가의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과 절차에 관한 사항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 사항에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 포함	의무규정
4	안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둠(제1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및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 포함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7항) ※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대상에 농림축산업인단체를 포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의무규정
5	안 제5조 (보험목적물)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 보험목적물 확대 노력 의무에 '매년' 문구 추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7	안 제11조 (손해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5항) ※ 정기교육 실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7항 신설)	재량규정
8	안 제25조의2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1항)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포함	의무규정
9	안 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농어업인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촉진 교육·홍보 의무화	의무/재량 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도 양 부처는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개정안은 재해보험 상품 개발 등 보험목적물 확대에 수반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품목 확대 현황 – **(농작물재해보험)** ('07) 10 → ('08) 15 → ('09) 20 → ('10) 25 → ('11) 30 → ('12) 35 → ('13) 40 → ('16) 50 → ('19) 62 → ('23) 70 → ('24) 73품목 – **(가축재해보험)** ('07~'08) 11 → ('09) 13 → ('10) 14 → ('11) 15 → ('12~'24) 16품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5) 21개 품목 → ('16) 24 → ('17) 27 → ('18~'23) 28품목 → ('24) 30품목
2	안 제2조의3 (실태조사)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2조의4 (재해보험 등의 심의)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도 피해율 산정 기준 마련 시 보험사업자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 및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 보장 신규품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이를 심의 중임 – 현재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림축산업인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 중이며 개정안은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5</td><td>안 제5조
(보험목적물)</td><td>–</td><td>•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 보장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며, 개정안은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td></tr>
<tr><td>6</td><td>안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td></tr>
<tr><td>7</td><td>안 제11조
(손해평가 등)</td><td>–</td><td>• 미대상
– 현재 손해평가인에 대해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교육 실시중이며, 개정안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교육을 실시중이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table><tr><th>구분</th><th>교육내용</th></tr><tr><td>농업
재해보험</td><td>•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td></tr><tr><td>양식수산물
재해보험</td><td>•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보험상품 및 약관
•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td></tr></table>자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발췌 정리

–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경우도 현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와 농어업재해보험사업관리위탁기관을 통해 검증조사를 시행 중이어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8</td><td>안 제25조의2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td><td>–</td><td>• 미대상
– 현재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중으로, 손해평가인력 전문성 제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업무 수행중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농어업재해보험 사업 운영비 일부를 지원중이며, 운영비에는 보험 상품 개선 및 손해평가사 역량 제고 등의 사항 포함
(단위: 백만원)
<table>
<tr><th>소관</th><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농림축산식품부</td><td>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1038－305)</td><td>7,912</td><td>7,951</td><td>8,272</td></tr>
<tr><td>해양수산부</td><td>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양식보험 사업관리위탁</td><td>403</td><td>403</td><td>403</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td></tr>
<tr><td>9</td><td>안 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td><td>×</td><td>•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td></tr>
</table>

2. 상세 사유

1.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가축질병치료보험 '24년 종료)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표 1]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10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6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파,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5%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안정보험 (15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보리, 옥수수, 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30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3품목)	김, 멍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각 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1]는 농협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11.3.31.>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입자 보험료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 중임

[표 2]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보험사업자 현황

소관	재해보험	보험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농협손해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	농협손해보험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실태조사(안 제2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농어가 수, 대상 품목 및 실태조사 방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역별·재해별 통계자료 수집·관리는 현행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계 수집·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및 이의신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청 현황, 보험금 지급신청 및 미지급 현황 등은 현재 보험사업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여 현재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보험료율의 산정(안 제9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함

❑ 개정안은 보험료율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 등 농어업재해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해당 재해의 종류, 규모, 판정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곤란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할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라. 보험가입의 촉진 등(안 제28조)

❑ 개정안은 현재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농어업인 대상 재해보험 가입 교육·홍보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홍보는 보험사업자가 실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보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험료의 일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 고양 및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홍보를 하도록 의무화될 경우, 현 시점에서는 현재의

보험사업자를 통한 교육·홍보 방식의 지속 여부, 교육·홍보 대상 및 방법 확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가축질병치료보험 '24년 종료)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2025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10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6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파,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5%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안정보험 (15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보리, 옥수수, 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30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3품목)	김, 멍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	대상 품목(품종/작형)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떫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14
2009	감자(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멜론, 파프리카), 오디, 차	35
2013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50
2017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57
2019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가을·월동), 단호박, 파(대파/쪽파·실파), 벼(조사료용), 옥수수(조사료용)	62
2020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67
2022	배추(가을배추)	67
2023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70
2024	두릅, 블루베리, 수박	73
2025	생강, 참깨, 녹두	76
합계	76개 품목	

2)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수입안정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2024	보리, 옥수수	9
2025	감자(봄,고랭지), 벼, 가을배추, 가을무,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15
합계	**15개 품목**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보험 대상품목(총 30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3):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괭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미역	전남 고흥군, 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방어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흰다리새우	충남 당진시, 아산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

❑ (대상품목) 76개 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

* ('01년) 2개(사과·배) → ('18) 57 → ('19) 62 → ('20~'22) 67 → ('23) 70 → ('24) 73 → ('25) 76

❑ (사업내용)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지원

❑ (사업예산) '25년 5,770억원(미지급금 포함)

(단위: 억원)

구분	'20	'21	'22	'23	'24	'25
합계	4,717	4,356	6,719	7,065	6,344	5,770
보험료지원	3,598	3,519	5,621	6,077	5,356	4,842
운영비지원	1,118	837	1,098	988	988	928

❑ (가입실적) '12년 이후 가입 증가*, '24년 가입률 54.2%

* ('12) 13.6% → ('19) 38.8 → ('20) 45.0 → ('21) 49.4 → ('22) 49.9→ ('23) 52.0 → ('24) 54.2

❑ (지급실적) '01~'24년까지 총 7조 2,434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위험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

○ **(보험금)** '24년 24.3만 농가 대상 보험금 1조 208억원 지급

* ('19) 8,980억원 → ('20) 10,158 → ('21) 5,740 → ('22) 5,558 → ('23) 10,042 → ('24) 10,208

○ **(손해율)** 연도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01년 이후 '24년까지 누적 손해율은 99.1% 기록

* ('19) 186.2% → ('20) 150.6 → ('21) 74.2 → ('22) 65.0 → ('23) 107.3 → ('24) 97.9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97~)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대상축종) 가축(16축종) 및 축산시설물

*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 (사업내용)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가입자별 최대 5천만원)

❑ (사업예산) '25년 1,099억원

(단위: 억원)

구분	'19	'20	'21	'22	'23	'24	'25
예산	1,206	1,122	1,191	1,191	1,191	1,122	1,099

❑ (보장내용)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 보장

* 자기부담비율(소·말 20%, 가금·돼지 5%)을 제외하고 100% 보상

❑ (가입실적) '24년 기준 가입률 95.4%(가입두수 298,222천두) 수준

* ('01) 21.7% → ('20) 92.8 → ('21) 93.7 → ('22) 94.7 → ('23) 94.4 → ('24) 95.4

❑ (지급실적) '97~'24년까지 총 2조 1,278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피해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보험금)** '24년 16개 축종, 11천 농가, 보험금 2,013억원 지급

* ('19) 1,743 → ('20) 1,477 → ('21) 1,462 → ('22) 1,679 → ('23) 1,648 → ('24) 2,013

○ **(손해율)** '18년 이후 손해율은 점차 안정화 추세

* ('18) 156.1 → ('19) 99.6 → ('20) 80.8 → ('21) 78.9 → ('22) 93.0 → ('23) 94.2 → ('24) 111.1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대상품목) '25년 15개 품목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24) 9(+옥수수·보리) → ('25) 15(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

❑ (보장피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시장가격하락 등

❑ (소요예산) '25년 2,078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예산 (미지급금)	3,159	4,649	4,649	5,149	5,100 (17년 1,321)	5,257 (18년 108)	2,500	2,500	2,500	8,100	207,817
국고지원	4,133	3,950	17,881	5,257	5,100	4,432	2,500	2,500	2,500	8,100	207,817

❑ (가입실적) '15~'24년 동안 총 18,544ha, 21,135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 저조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23) 3.3 → ('24) 3.9

○ '24년 기준 총 9개 품목 2,649ha, 3,297 농가 가입

❑ (지급실적) '15~'24년 동안 총 14,383 농가에 보험금 95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누적 손해율은 131.7%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1) 67.8 → ('22) 110.0 → ('23) 150.9 → ('24) 76.6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17) 77 → ('19) 109 → ('21) 25 → ('22) 40 → ('23) 59 → ('24) 63

○ '24년 기준 총 9개 품목 1,872 농가에 보험금 63억원 지급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황) 재해피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입 ('08), 거대재해의 경우 국가재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위험 분담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
○ 대상품목(30개)
- 본사업: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 등 17개 품목
- 시범사업: 김, 미역, 멍게 등 13개 품목
○ 보상재해
-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이상조류, 저수온 등
- (특약) 전기장치위험, 이상조류·고수온·저수온·수질, 조수, 양식시설물
○ 보장수준
- 수산물: 산지가격의 85~90% 수준으로 보상(보험가입금액 이내)
- 시설물: 원상복구비 전액(보험가입금액 이내)

❑ (지원) 보험가입 유도 및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 (국비 50%, 지방비 20~30%) 및 운영비 전부(100%)를 지원

* 예산: ('20) 268억원 → ('21) 283억원 → ('22) 253억원→ ('23) 230억원→ ('24) 237억원→ ('25) 246억원

❑ (가입) 정부가 지원하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物的)보험이고, 가입여부는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보험

*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人的보험은 가입의무 부여(ex 산재보험, 어선원보험)

** 가입자 수(가입률): ('20) 3,744어가(39.1%) → ('21) 2,682(28.0) → ('22) 2,733(37.0) → ('23) 2,936(39.8)→ ('24) 2,926(39.7)

❑ 추진절차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를 통해 상품개발, 가입 및 보험금지급 등 일련의 절차 수행, 우리부에서 관리·감독 및 국고 보조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676,226	589,676	54.2	1,141,145	544,222	47.7%	145,285	307,424	39.7%	144,213	12.6%	168.8	21.3	263,766	1,020,784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8,222	38,631	95.4	221,593	107,414	48.5%	7,954	20,208	12.7%	86,017	38.8%	74.3	28.8	44,881	201,344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수입안정보험(구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649	3,297	3.9	9,001	4,500	50.0%	1,005	2,542	39.4%	953	10.6%	339.8	36.0	2,061	6,329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주: 수입안정보험은 25년 4월부터 판매 개시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건, 백만원)

연도	가입두수 (천두)	가입 건수 (건)	보험 가입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1]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38	726	7.2	3,191	1,596	50%				1,596	50%	83,452,243	41,726,122	27,935	2,453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90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65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92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716	13.3	2,265	1,132	50%				1,133	50%	72,932,425	36,478,559	7,783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75	35,838,838	63	7

주: 1) '25년 이전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25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1]			자부담[2]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26	39.7	30,013	15,049	50	3,760	5,917	32	5,287	18	1,807	7,301	289	31,368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3	5,847	32	5,301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3	32	4,219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를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